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3-3호

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

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금융정보분석원장"을 "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는 금융회사 등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경우"를 "경우 과태료 부과안을 작성하여"로 한다. 제23조제1항 중 "결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"를 "결정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조치안을 작성하여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

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의견청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수탁기 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같이 신설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검사결과의 통보) ① 검사	제12조(검사결과의 통보) ①
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	
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	
그 결과를 <u>금융정보분석원장</u> 에	종합정리하여 금융정
게 통보하여야 한다.	<u>보분석원장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
	원장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는
	금융회사등에 검사결과를 통보
	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.
제18조(과태료의 부과) ① 검사수	제18조(과태료의 부과) ①
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위	
법행위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	
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<u>경</u>	<u>경</u>
<u>우</u>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	우 과태료 부과안을 작성하여 -
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제재절차) ① 검사수탁기	제23조(제재절차) ①
관의 장은 검사결과 적출된 지	
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<u>결</u>	<u>결</u>
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	정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
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한	조치안을 작성하여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의견청
	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
	수탁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재
	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
	<u>할 수 있다.</u>